

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1월 13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1월 13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02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(2003년1월18일) 상정
- 제102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(2003년1월18일)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이상훈)

□ 개정이유

- 국민건강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(2002. 8. 26)됨에 따라 사무의 구 위임사항 및 법적용 근거 조항 등을 일부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공중위생업소의 시설 및 통보사항 ⇒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사항으로 조정함(안 별표)
-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과징금 처분 및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을 신설 조정하여 구에 위임함(안 별표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input type="radio"/> 없 음	<input type="radio"/> 없 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 음

나. 반대토론

- 없 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

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 81 호
의 결 년월일	2003. 1. 21 (제102회)

제출년월일 : 2003. 1. 13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개정구분 : 부분개정

□ 개정이유

- 국민건강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(2002. 8. 26)됨에 따라 사무의 구 위임사항 및 근거법 적용 등을 일부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공중위생업소의 시설 및 통보사항 →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사항으로 조정함.(안 별표)
-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과징금 처분 및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등을 신설 조정하여 구에 위임함.(안 별표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사무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

부천시사무위임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민원허가과 위임사무명단의 제3호란 및 환경위생과 위임사무명단의 제5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실과소별	위 임 사 무 명	단 위 사 무 명	근 거 법 적 용	수임기관
민 원 허가과	3.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. (다만, 시장의 권한중 적용대상에 열거한 업종에 한함) 〈적용대상〉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제1호 공중 위생영업	가.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나. 공중위생영업의 승계	·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·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	구청장
환 경 위생과	5.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(다만, 시장의 권한중 적용대 상에 열거한 업종에 한함) 〈적용대상〉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 1항제1호공중위생영업법 (숙박업, 복용장업, 이용업 , 미용업, 세탁업, 위생관리 용역업) 및 공중이용시설	가. 보고 및 출입·검사 나. 위생자도 및 개선명령 다.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라. 과징금 처분 마. 행정체재처분효과의 승계 바. 청문 사. 위생관리등급공표 등 아. 과태료	· 공중위생관리법제9조 · 동법제10조 · 동법제11조 · 동법제11조의2 · 동법제11조의3 · 동법제12조 · 동법제14조 · 동법제22조, 제23조	구청장

부 칙

이 조례는 2003년 2월27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○ 부천시 사무의 구위임사항

현 행					개 정 안				
실과소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 적용	수임 기관	실과소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 적용	수임 기관
민 원 허가과	3.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. (단, 시장의 권한중 적용 대상에 열거한 업종에 한함) 〈적용대상〉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공중위생영업	가.공중위생업소 의 시설 및 통보	· 공중위생 관리법 제3조	구청장	민 원 허가과	3.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. (다만, 시장의 권한중 적용 대상에 열거한 업종에 한함) 〈적용대상〉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공중위생영업	가.공중위생영업의 신고	· 공중위생 관리법 제3조	구청장

현 행					개 정 안				
실과소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 적용	수임 기관	실과소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 적용	수임 기관
환경 위생과 만 시장의 권한중 적 용대상에 열기한 업 종에 한함)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공중위생영업법 (숙박업, 목욕장업, 이용업, 미용업, 세탁업, 위생 관리 용역업) 및 공중 이용시설	5.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(디 만 시장의 권한중 적 용대상에 열기한 업 종에 한함)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공중위생영업법 (숙박업, 목욕장업, 이용업, 미용업, 세탁업, 위생 관리 용역업) 및 공중 이용시설	가.보고 및 출입 검사 나.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다.공중위생영 업소의 폐쇄등 라.청문 마.위생관리등급 공표등 바.과태료	· 공중위생 관리법 제9조 · 동법제10조 · 동법제11조 · 동법제12조 · 동법제14조 · 동법제22조, 제23조	구청장	환경 위생과 만 시장의 권한중 적 용대상에 열기한 업 종에 한함)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공중위생영업법 (숙박업, 목욕장업, 이용업, 미용업, 세탁업, 위생 관리 용역업) 및 공중 이용시설	5.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(디 만 시장의 권한중 적 용대상에 열기한 업 종에 한함)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공중위생영업법 (숙박업, 목욕장업, 이용업, 미용업, 세탁업, 위생 관리 용역업) 및 공중 이용시설	가.보고 및 출입 검사 나.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다.공중위생영 업소의 폐쇄등 라.과징금 처분 마.행정제재처분 바.청문 사.위생관리등급 공표등 아.과태료	· 공중위생 관리법 제9조 · 동법제10조 · 동법제11조 · 동법제12조 · 동법제13조 · 동법제14조 · 동법제22조, 제23조	구청장